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97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공지능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안 제3조제5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25.

다. 회 부 일 : 2025.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 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의 구축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 제35조 등).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안 제3조제5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6조 제2항 제7호).
- 정부는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을 시행할 때 학습용데이터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제3항 후단 신설).
-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5조 제1항 후단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설></u>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u>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u>
7. (생략) ③ ~ ⑦ (생략)	<u>8. (현행 제7호와 같음)</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현행	개정안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② (생략)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 ----- ----- ----- ----- ----- <u>. 이 경우 학습용 데이터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 ----- ----- ----- ----- ----- ----- <u>.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u>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진행 중인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달로 이미 일반인들의 삶에서 인공지능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나 그만큼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이른바, 인공지능취약계층은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디지털 격차는 기술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수립과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추진과 인공지능 사업자의 고영향 인공지능 평가도 인공지능취약계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그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 국민 일상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 안 제15조 제3항 후단의 경우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은 데이터 활용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으로 활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 구축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3항에 특정 집단 관련 데이터 구축 노력 의무를 반영하는 것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본권 영향의 범위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므로,

안 제35조 제1항 후단과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한 고려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폭 넓게 사람의 기본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를 오히려 해하게 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문 의 처
02)6788-5230